

## 2. 垂直降下式 救助袋 規程

**제 1조(용어의 정의)** 수직 강하식 구조대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라 함은 포지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의 피난기구를 말한다.

**제 2조(검정신청등)** 수직 강하식 구조대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용 기계·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제1장 및 제2장을 적용하되, 형식검정시에 제출할 견품의 수량, 형식변경승인범위, 경미한 사항의 변경범위, 개별검정의 최저수검수량 및 개별검정의 합격표지는 별표와 같다.

**제 3조(구조)** ①구조대는 안전성이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②구조대의 외부포지는 내화성이 있는 유리섬유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부포지와 충분한 공기충을 가져야 한다. 다만, 전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입구틀 및 구조대 취부틀의 입구는 직경 50센티미터 크기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

④구조대는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
⑤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신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.

⑥포지, 지지틀, 구조대취부틀, 기타 부속장치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.

**제 4조(재질)** 구조대에 사용하는 입구틀, 지지틀 및 구조대취부틀의 재질의 정도는 KSD 3503(일반구조용 압연강재) KSD 3507(배관용 탄소강판), KSD 3566(일반구조용 탄

소강판), KSD 6008(알루미늄 합금주물), KSD 6759(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축형재)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. 이 경우 내식성이 없는 재질은 내식가공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 5조(강도)** ①구조대에 사용하는 내부포지는 KSK 0522(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: 래블스트립법)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경사방향 180킬로그램이상, 위사방향 9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전장지지재(구조대에 걸리는 인장력을 주로 부담하는 부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한 구조의 경우에는 위사 및 경사방향으로 100킬로그램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.  
②구조대에 사용하는 외부포지는 KSK 0522(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: 래블스트립법)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경사방향 60킬로그램이상, 위사방향 30킬로그램 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.  
③내부포지의 인열강도는 KSK 0536(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)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경우 12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.  
④구조대의 입구틀(부속장치포함)은 구조대 길이에 따라 이 개표에 의한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변형이 없어야 한다.

구조대의 길이	인장강도 (킬로그램)
20미터 이하의 것	600
20미터를 초과 30미터 이하의 것	690
30미터를 초과하는 것	710

⑤전장지지재를 설치하지 않은 구조의 구조대 표지와 취부틀과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KSK 0522(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 : 래블스트립법)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을 경

우 250 킬로그램 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강하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.

⑥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의 구조대 포지와 취부틀파의 결합부분의 강도는 폭 50센티미터의 시험편에 아래표에 의한 구조대 길이에 따라 하중을 가했을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. 다만, 강하시 직접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.

구조대의 길이	인장강도 (킬로그램)
20미터 이하의 것	300
20미터를 초과 30미터 이하의 것	345
30미터를 초과하는 것	355

⑦전장지지재를 설치한 구조대의 전장지지재와 구조대 취부틀파의 결합부의 강도는 구조대 길이에 따라 아래표에 의한 하중을 가하였을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N: 전장지지재의 본수

구조대의 길이	인장강도 (킬로그램)
20미터 이하의 것	$\frac{3000}{N}$
20미터를 초과 30미터 이하의 것	$\frac{3450}{N}$
30미터를 초과하는 것	$\frac{3550}{N}$

제 6조(내후성) 구조대에 사용하는 내부포지는 KSK 0705(내후견뢰도 시험방법)에 의하여 20시간 노출시킨후 제 4조(강도)제 1항의 강도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 강도 저하율은 2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.

제 7조(마모강도) 구조대에 사용하는 내부포지는 KSK 0540(직물의 마모강도시험)에 의한 마모 강도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, 평면 마모

강도 200회이상, 굴곡마모강도 800회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8조(동작시험) ①시험용 모형에 의해 강하였을 때 정지하지 말아야 하며 평균강하속도 6미터/초 이하, 순간최대 강하속도 8미터/초 이하이어야 한다.

②실제시험중 정상적인 자세로 강하하였을 때 정지하지 말아야 하며 평균속도 4미터/초 이하, 순간최대속도 6미터/초 이하이어야 한다.

제 9조(충격시험) 구조대를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연속하여 3회 낙하시켰을 경우 본체 및 결합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
제 10조(수축율) 구조대에 사용하는 내부포지는 KSK 0601(직물의 수축율 시험방법: 상온수 침지법)에 의한 시험을 하였을 경우 수축율이 2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.

제 11조(표시) 구조대에는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보기쉬운 곳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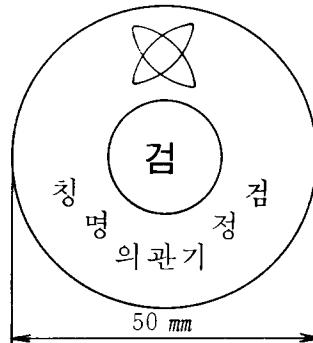
1. 종별, 형식
2. 형식승인번호
3. 길이
4.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
5. 제조번호, 제조년월
6. 사용상 주의사항
7. 사용장소(건물외부, 건물내부, 사다리 소방자동차등)

#### 부 칙

1. 시행일: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경과조치: 이 규정 고시일 현재 소방대상물에 기 설치한 수직구조대에 대하여는 제 3조의 규정중 제 2항을 제외한 구조, 제 8조의 동작시험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사항에 대하여만 검정을 한다.

[별 표]

구 분	내 용
형식 검정시에 제출 할 견품의 수량	완성품 (1) 제 1 차검정용 1 대 (2) 제 2 차검정용 1 대  부분품 (1) 포지 : $1 \times 1 \text{m}$ : 3 개 (2) 로우프 및 벨트(로우프 및 벨트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) 2 개 (3) 지지를 1 개
형식변경의 승인 범위	(1) 포지, 로우프, 지지를 및 벨트의 재질 (2) 구조 변경
경미한 사항의 변경범위	(1) 부속부품의 재질 또는 구조 (2) 지지를의 도장방법
개별 검정의 최저수검수량	완성품 1 대 이상
개별검정의 합격 표지	



비고 : 50 mm 철인으로 흑색 잉크를 사용하여 구조대에 날인.

